

## 대학원 학칙

- 제36조(논문심사)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.
-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,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.

##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- 제27조(논문심사의 결정)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.
-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/3이상,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/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대학원 내규

- 제63조(학위청구논문의 심사)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(이하 “논문심사”라 한다)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.
- ②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
- 제64조(논문심사의 합격 등)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.
-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·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